#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제규정

- 1. 위임전결처리 규정
- 2. 가맹단체운영 규정
- 3. 가맹단체 가맹탈퇴 규정
- 4. 관리단체 운영 규정
- 5. 이사회 운영 규정
- 6.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
- 7. 구 지부 운영 규정
- 8. 생활체육위원회 규정
- 9. 법제 ·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
- 10. 세입ㆍ세출 외 수입금 운용관리 규정
- 11.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
- 12. 임직원 행동강령
- 13. 전문체육위원회 규정

303. 가맹단체 가맹탈퇴 규정

##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가맹탈퇴 규정

제정 2007. 3.30. 개정 2010. 7.6. 개정 2014. 6.25.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(이하 '장애인체육회'라 한다) 규약 제7조에 의하여 가맹단체의 가맹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6.25.>

제2조 (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14.6.25.>

- 1. "가맹"이라 함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하여 장애인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4.6.25.>
- 2. "가맹단체"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종목별 경기단체 및 유형별 체육단체로서 정가맹 또는 준가맹으로 승인된 가맹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14.6.25.>
- 3. "정가맹단체"는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가맹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을 동의하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한 가맹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14.6.25.>
- 4. "준가맹 단체"는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써 준가맹을 승인받아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가맹단체를 말한다. <개정 2014.6.25.>
- 5. "인정단체"는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.<개정 2014.6.25.>
- 6. "탈퇴"라 함은 장애인체육회에 의해 가맹을 승인받은 경기단체가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가맹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종목별 경기단체라 함은 종목별로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경기단체를 말한다. <신설 2014.6.25.>

③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라 함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중앙단체에 서울특별시를 대표하여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한 단체를 말한다. <신설 2014.6.25.>

### 제2장 가 맹

- 제3조 (가맹구분) ① 가맹단체는 정가맹 및 준가맹 단체로 구분한다. <개정 2014.6.25.> ② 장애인체육회는 가맹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제5조의 가맹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장애인체육회 규약 제6조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여 준가맹 단체로 숭인할 수 있다. 다만, 명시된 숭인조건을 준수해야한다. <개정 2014.6.25.>
- ③ 장애인체육회는 필요한 경우 당해 단체의 대표성만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되 장애인체육회와의 권리 및 의무관계가 없는 인정단체를 승인할 수 있다. 다만, 명시된 승인조건을 준수해야 한다. <개정 2014.6.25.>
- ④ 장애인체육회는 준가맹 단체의 정가맹에 대하여 준가맹 승인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여야 재심의 할 수 있으며, 승인조건 이행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. <개정 2014.6.25.>

제4조 (가맹신청서류) 장애인체육회에 가맹코자 하는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상정할 대의원총회 3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경우 다음 제5호, 제7호는 제외한다. <개정 2014.6.25.>

- 1. 가맹신청서(「별표」장애인체육회 소정양식) <개정 2014.6.25.>
- 2. 단체연혁
- 3. 단체의 임원명단(취임승낙서 및 이력서첨부)
- 4. 정관 또는 단체규약 <개정 2014.6.25.>
- 5.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
- 6. 구 지부 및 장애유형별분과위원회 설치현황 <개정 2014.6.25.>
- 7. 선수 또는 팀 등록현황
- 8.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
- 9.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
- 10. 가맹신청을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(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)
- 11. 당해 단체의 국제장애인체육기구의 참고자료
- 12.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중앙가맹단체의 시·도 지부 인증서

**제5조 (가맹요건)** ① 장애인체육회 가맹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6.25.>

- 1.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당해 유일의 종목별 경기단체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일 것 <개정 2014.6.25.>
- 2. 서울특별시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별 경기단체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일 것 <개정 2014.6.25.>
- 3.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중앙가맹단체의 시·도 지부인 단체일 것. 다만,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신설 2014.6.25.>
- 4.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(IPC) 공인종목이거나 국제장애인체육기구가 인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기종목일 것. 다만, 경기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6.25.>
- 5. 당해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<개정 2014.6.25.>
- 6. 종목별 경기단체는 장애유형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장애유형 종목이 장애인올림픽대회, 농아인올림픽대회, 장애인아시안게임 종목이 아닐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6.25.>
-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장애인체육회가 가맹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. 다만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경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는 적용하지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4.6.25.>
- ③ 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가맹단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관(규약)이 제정되어야한다. <개정 2014.6.25.>
- **제6조 (심의절차)** ① 가맹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장애인체육회 규약 제7조에 의한다. <개정 2014.6.25.>
- ② 준가맹단체 및 인정단체의 지정은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승인한다. <개정 2014.6.25.>
- 제7조 (제한사항) ①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라 할지라도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의무사항 및 지시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할 수 있으며, 장애인체육회 의 예산지원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. <개정 2014.6.25.>
- ② 이 규정 제3조 2항에 의한 준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 규약에서 정한 권리사항 중 대의원 파견권이 없으며,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장애인체육회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4.6.25.>

#### 제3장 탈 퇴

**제8조 (탈퇴요건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에서 탈퇴케 한다. <개정 2014.6.25.>

- 1. 가맹단체가 해산하거나 탈퇴를 요청하였을 경우
- 2. 제5조의 가맹요건을 상실하여 가맹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
- 3. 가맹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장애인체육회 규약, 규정 및 의결된 지시 사항을 위배하여 가맹단체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<개정 2014.6.25.>
- 4. 임원간의 분쟁, 재정악화, 집행부 부재 및 임원의 권위와 지도력 결여 등의 사유로 가맹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경우
- 5. 장애인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장애인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경우 <개정 2014.6.25.>

제9조 (탈퇴신청) 가맹단체가 탈퇴코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탈퇴신청서
- 2. 탈퇴사유서
- 3.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의 회의록(법인인 경우는 이사회 회의록)

제10조 (관리단체 지정) 가맹단체를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여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4.6.25.>

## 부칙[2007.8.23.]

제1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칙[2010.7.6.]

제1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칙[2014.6.25.]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# [별표] <개정 2014.6.25>

접수일		ز	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가맹 신청서						l 시청서	
접수번호										
① 단체 명							② 연	락 처		
신청인	③ 주	소								
(대표자)	④ 성명	(한자)			(		)	⑤ 주두	민등록번호	
	⑥ 현 =	주 소								
⑦ 설 립 연 월 일										
⑧ 설 립 목 적										
⑨ 회원 및 지부 현황		회원수	남:	Ċ	역 :	계	:	지 부		
10 국제장애인체육기구관계		명 칭						회 원 국 가입여부		
① 중앙 가맹단체		명 칭						대한장애인체육 기맹여부	ठॅ	

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규약 제7조 및 가맹탈퇴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가맹을 신청하며, 가맹단체운영규정 제5장 및 제6장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표자)

(인)

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장 귀하

## 붙임서류

- 1. 단체 연혁
- 2. 임원 명단(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첨부)
- 3. 단체정관(규약)
- 4.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
- 5. 구 지부 및 장애유형별분과위원회 설치현황
- 6. 선수 또는 팀 등록현황

- 7.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
- 8.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
- 9. 가맹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 (법인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)
- 10. 당해 단체의 국제장애인체육기구의 참고자료 등
- 11. 중앙 가맹단체 시·도지부 인증서